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인사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순감하여 대체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6명(4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16명)을 증원하고 이에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맞춤형농정과의 명칭을 농업경영체과로, 농업경영정보과의 명칭을 농업정보과로 변경하면서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를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로 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업정책국장과 식량정책관”을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농업정책과·농지과·경영인력과·농업금융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농업기반”을 “농업정책과·농지과·경영인력과·농업금융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공익직불정책과·농업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12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을 각각 “공익직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인의 소득안정시책”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공익직접지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밭농업”을 “논활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3항) 중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농업기반”을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공익직불정책과·농업기반”으로 한다.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농업생명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등급으로, 각 정책관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농업생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유통소비정책관은 직제 제15조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

한다.

⑤ 농업생명정책관은 직제 제15조제3항제33호, 제36호,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 및 제46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20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와·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맞춤형농정과 및 농업경영정보과”를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와·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농업경영체과·농업정보과 및 직불관리과”로, “맞춤형농정과장 및 농업경영정보과장”을 “농업경영체과장·농업정보과장 및 직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맞춤형농정과장”을 “농업경영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관리 및 농림사업시스템 통합 연계 지원”을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영정보과장”을 “농업정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직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등 관리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자금집행 등 운영
3.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직접지불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콜센터 운영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제22조제5항제6호 중 “직접지불제”를 “공익직접지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업”을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농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5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6 총계 “607”을 “608”로 하고, 일반직 계 “603”을 “604”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

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2”를 “103”으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0”을 “10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인사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7 총계 “612”를 “6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8”을 “609”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6”을 “107”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6”을 “97”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인사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8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97”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97”을 “1,110”으로 하며, 농업주사 “94”를 “97”로 하고,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4”를 “15”로 하며, 수의주사 “109”를 “110”으로 하고, 농업주사보 “123”을 “127”로 하며,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4”를 “15”로 하고, 수의주사보 “133”을 “13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3.0”을 삭제하고, “농업주사 3.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 1.5”를 삭제하고, “농업주사보 4.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보 2.5”를 삭제하고,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9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97”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97”을 “1,110”으로 하며, 농업주사 “93”을 “96”으로 하고,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4”를 “15”로 하며, 수의주사 “106”을 “107”로 하고, 농업주사보 “116”을 “120”으로 하며,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4”를 “15”로 하고, 수의주사보 “126”을 “128”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3.0”을 삭제하고, “농업주사 3.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 1.5”를 삭제하고, “농업주사보 4.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보 2.5”를 삭제하고,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10 총계 “1,452”를 “1,478”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4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442”를 “1,47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2”를 “104”로 하고,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51”을 “158”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58”을 “17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9”를 “19”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0”를 삭제한다.

별표 11 총계 “1,466”을 “1,492”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56”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456”을 “1,49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6”을 “108”로 하고,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

보 “148”을 “155”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58”을 “17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9”를 “19”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0”를 삭제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3.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존속기한: 2020년 9월 11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존속기한: 2022년 9월 11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3명 (5급1, 6급2)	2022년 9월 30일까지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4명 (4급1, 6급2,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신 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① <u>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u> ----- ----- ----- ----- ----- -----.
<신 설>	③ <u>정책기획관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② · ③ (생략)	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u>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u>

④ ~ ⑧ (생략)

제9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장과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② 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 · 농지과 · 경영인력과 · 농업금융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 · 식량정책과 · 식량산업과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농업기반과 및 간

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 ⑪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9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장-----

-----.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 농업정책과 · 농지과 · 경영인력과 · 농업금융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 · 식량정책과 · 식량산업과 · 공익직불정책과 · 농업기반-----

척지농업과를 두되,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⑩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 공익직불정책과장-----

⑤ ~ ⑪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⑫ 공익직불정책과장-----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4. 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

6. 공익직접지불제 -----

<삭제>

관한 사항

8. (생 략)

9. 밭농업직접지불제에 관한 사
항

<신 설>

⑪ · ⑫ (생 략)

⑬ 식량정책관은 식량정책과 ·
식량산업과 · 농가소득안정추진
단 · 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
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업정
책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
산업정책실장 · 식품산업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 및 농업생명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식품산업
정책실장은 가등급으로, 각 정
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8. (현행과 같음)

9. 논활용-----
-

10.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에 관
한 사항

⑬ · ⑭ (현행 제11항 및 제12항
과 같음)

⑮ ----- 식량정책과 ·
식량산업과 · 공익직불정책과 ·
농업기반-----

-----.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
산업정책실장-----

----- 가등급--

-----.

②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식
품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은 식품산업정책관 · 유통
소비정책관 및 농업생명정책관
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

<신 설>	<u>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u>
<신 설>	③ <u>식품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신 설>	④ <u>유통소비정책관은 직제 제15조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신 설>	⑤ <u>농업생명정책관은 직제 제15조제3항제33호, 제36호,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 및 제46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② ~ ⑩ (생 략)	⑥ ~ ⑫ (현행 제2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생 략) ② <u>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과·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맞춤형</u>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과·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농업경</u>

농정과 및 농업경영정보과를 두
되, 운영지원과장 및 소비안전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
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
업연구관으로, 맞춤형농정과장
및 농업경영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
장 및 인증관리팀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⑨ 맞춤형농정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시
스템 관리 및 농림사업시스템
통합 연계 지원

7. (생략)

<신 설>

⑩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발농업·조건불리지역·경관
보전 직불제 이행점검 등 관
리

영체과·농업정보과 및 직불관
리과-----

----- 농업경영체과장·농업
정보과장 및 직불관리과장----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농업경영체과장-----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7. (현행과 같음)

8.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⑩ 농업정보과장-----
-----.

<삭 제>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
제 사업대상자 선정·자금집
행 등 운영

3.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접지불제 및 농업용 면세
유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삭제>

5. ~ 7. (현행과 같음)

⑪ 직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 논타작물재
배지원사업 이행점검 등 관리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
제 사업대상자 선정·자금집
행 등 운영

3.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직접지불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및 평
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콜센터
운영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

제22조(지원) ① ~ ④ (생략)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직접지불제 이행 점검 및 농 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 13. (생략)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사 · 단속에 관한 사항

제22조(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1. ~ 5. (현행과 같음)

6. 공익직접지불제, 농타작물재
배지원사업 ----- 사
후관리 등-----
 --

7.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농업--

8. ~ 13. (현행과 같음)

제29조(동립축산식품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 7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② -----

-----.

----- 7퍼센트-----

14명(6급 1명, 7급 13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 ⑤ (생략)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
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
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원의 운영) ① -----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
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채용
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
여 운영한다.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
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

신 · 구조문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 계	· <u>607</u>	· <u>608</u>	+1
· · 일반직 계	· · <u>603</u>	· · <u>604</u>	+1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102</u>	· · <u>103</u>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전문경력관 나군(인사담당) · ·	 <u>100</u> · · 1 · ·	 <u>101</u> · · 삭제 · ·	 +1 △1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계	· <u>612</u>	· <u>613</u>	+1
· · 일반직 계	· · <u>608</u>	· · <u>609</u>	+1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106</u>	· · <u>107</u>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전문경력관 나군(인사담당) · ·	 <u>96</u> · · 1 · ·	 <u>97</u> · · 삭제 · ·	 +1 △1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097</u>	<u>삭 제</u>	△1,097
일반직 계	<u>1,097</u>	<u>1,110</u>	+13
.	.	.	
.	.	.	
농업주사	<u>94</u>	<u>97</u>	+3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4</u>	<u>15</u>	+1
.	.	.	
.	.	.	
수의주사	<u>109</u>	<u>110</u>	+1
.	.	.	
.	.	.	
농업주사보	<u>123</u>	<u>127</u>	+4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4</u>	<u>15</u>	+1
.	.	.	

수의주사보	<u>133</u>	<u>135</u>	+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9</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3.0</u>	<u>삭 제</u>	△13.0
<u>일반직 계</u>	<u>13.0</u>	<u>삭 제</u>	△13.0
<u>농업주사</u>	<u>3.5</u>	<u>삭 제</u>	△3.5
<u>수의주사</u>	<u>1.5</u>	<u>삭 제</u>	△1.5
<u>농업주사보</u>	<u>4.5</u>	<u>삭 제</u>	△4.5
<u>수의주사보</u>	<u>2.5</u>	<u>삭 제</u>	△2.5
<u>농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097</u>	<u>삭 제</u>	△1,097
일반직 계	<u>1,097</u>	<u>1,110</u>	+13
.	.	.	
.	.	.	
농업주사	<u>93</u>	<u>96</u>	+3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4</u>	<u>15</u>	+1
.	.	.	
.	.	.	
수의주사	<u>106</u>	<u>107</u>	+1
.	.	.	
.	.	.	
농업주사보	<u>116</u>	<u>120</u>	+4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4</u>	<u>15</u>	+1

·	·	·	
수의주사보	<u>126</u>	<u>128</u>	+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9</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3.0</u>	<u>삭 제</u>	△13.0
<u>일반직 계</u>	<u>13.0</u>	<u>삭 제</u>	△13.0
<u>농업주사</u>	<u>3.5</u>	<u>삭 제</u>	△3.5
<u>수의주사</u>	<u>1.5</u>	<u>삭 제</u>	△1.5
<u>농업주사보</u>	<u>4.5</u>	<u>삭 제</u>	△4.5
<u>수의주사보</u>	<u>2.5</u>	<u>삭 제</u>	△2.5
<u>농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452</u>	<u>1,478</u>	+26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442</u>	<u>삭 제</u>	△1,442
일반직 계	<u>1,442</u>	<u>1,478</u>	+3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3</u>	<u>14</u>	+1
·	·	·	
·	·	·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u>102</u>	<u>104</u>	+2
·	·	·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151</u>	<u>158</u>	+7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158</u>	<u>174</u>	+16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9</u>	<u>19</u>	+10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0</u>	<u>삭 제</u>	△10.0
<u>일반직 계</u>	<u>10.0</u>	<u>삭 제</u>	△10.0
<u>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u>	<u>10.0</u>	<u>삭 제</u>	△10.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466</u>	<u>1,492</u>	+26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456</u>	삭 제	△1,456
일반직 계	<u>1,456</u>	<u>1,492</u>	+3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3</u>	<u>14</u>	+1
·	·	·	
·	·	·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u>106</u>	<u>108</u>	+2
·	·	·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148</u>	<u>155</u>	+7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158</u>	<u>174</u>	+16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9</u>	<u>19</u>	+10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0</u>	<u>삭 제</u>	△ 10.0
<u>일반직 계</u>	<u>10.0</u>	<u>삭 제</u>	△ 10.0
<u>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u>	<u>10.0</u>	<u>삭 제</u>	△ 10.0